

의안번호	2204655
의 퇴 인	김소희의원
회 답 일	2024.11.15.
추 계 번호	24B4305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의료법인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신청이 증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원, 2030년 3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97억원(연평균 19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특례	6	12	19	26	33	97	19

주: 1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2. 본 추계는 의료법인에 대한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신청 물량을 가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예산 편성 및 사업 수요에 따라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(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)	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·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(다만, 여성·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,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)에 포함하고,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봄. 다만,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(의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)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22조의2(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특례)	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	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(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)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본문 참조
2	안 제22조의2(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특례)		
3	안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	—	• 미대상 – 현행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– 참고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며,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해 소요되는 금액을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환산한 금액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 –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으나, 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신청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의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임
 - 개정안은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
 - －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법인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“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²⁾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신청 물량 증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(사업목적)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비용 지원
 - － (사업대상)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
 - － (시행주체)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- －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통해 무상지원금을 배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, 사업주의 신청이 증가하더라도 재정지출이 증가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.11. 기준, 단위: %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1	2.0	2.0	2.0	2.0	2.0

2)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(1453-304)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지원, 온라인 판로지원시스템 개편, 사업운영 및 판매활동 지원 등을 수행

- 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,
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에 따른 감소는 없는 것으로 가정
- 본 추계서는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의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산출하며, 인증 유지율은 100%로 가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을 토대로 산출

- (지원단가) 개정안에 따른 지원단가는 2025년 계획안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단가(3억원)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
- (신청규모)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신청 물량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2024년 3월 기준 의료법인(1,617개) 현황을 토대로 산출
 - 2023년 기준 0.1%의 의료법인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참여하여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
 - 참고로, 2025년 예산안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형 및 자회사형 등으로 구분되며³⁾, 연간 162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임
- ※ 일반형: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이상, 7년 이상으로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
- ※ 자회사형: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 중 '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소유'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함

[표 2] 2025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계획안 산출내역

○ 표준사업장 지원금(516억원)
· 일반 및 자회사 등 : 162개소 × 3억원 = 486억원
· 도약지원형 : 10개소 × 3억원 = 30억원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신청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

3) 2023년 이전에는 다른 유형(창업자금형, 사회적경제형)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음

[표 3] 지원단가와 신청 및 지원규모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, 천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지원단가(A)	306	312	318	325	331
신청규모	2	2	2	2	2
지원규모(누적)(B)	2	4	6	8	10
추가재정소요(C=A×B)	612	1,248	1,910	2,598	3,312

주: 사업장의 수는 올림으로 산출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assembly.go.kr